

7條에 公印捺印의 位置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議員여러분께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며 本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오니 부디 本議員이 發議한대로 可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公印規定 廢止規定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廢止規定案은 大統領令 第13,390으로 改正公布된 事務管理規定 第41條에 地方自治團體의 公印에 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規定되어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公印條例를 制定하고 現행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公印規定을 廢止하여 公印 관수및 管理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發議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本議員이 發議한대로 可決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元泰 李康泌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公印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元泰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公印規定 廢止規定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여러 議員님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休會의件

(14時17分)

○議長 金元泰 議事日程 第7項 休會의件을 上程합니다.

금번 臨時會에서 계속 處理되어야 할 案件들을 보다 심도있는 審議를 위해 3月7日 土曜日 1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會議을 마치고 第3次 本會議는 3月9日 月曜日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19分 散會)

○出席議員(30人)

金元泰	黃泰植	曹熙太
宋潤錫	金星煥	朴炆緒
李天揆	李鍾萬	李奉衡
具又石	金鍾烈	沈載昶
孫龍浩	洪性煥	俞南烈
金汶泰	李宗一	鄭然宇
金相烈	李康泌	金東暉
蔡雲錫	尹東鉉	洪吉杓
田炳萬	李仁求	尹正鏞
金裕顯	尹明奎	權五範

○出席公務員

區廳長	孫長鎬
副區廳長	朴鍾心
總務局長	鄭泰淵
財務局長	李鍾祿
市民局長	梁石龍
都市整備局長	金潤坤
建設局長	金永圭
保健所長	孟時仙
總務課長	金石鳳
企劃豫算課長	金鎮澤

(參照)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 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改正理由

1991.12.31.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32條에 依據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를 改正하고자 함.

○主要骨子

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에도 旅費를 支給함.

○根據法令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施行令 第15條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 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中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中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
 第4條中 “議員이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를

“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로 한다.
 第5條第1項中 “國內旅行”을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國內旅行을”로 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1992年 3月6日부터 適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施行令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이하 “議會”라 한다.) 議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에 대하여 支給하는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第3條(出席日數 計算)(생략)		第3條(出席日數 計算)(現行과 같음)		
第4條(旅費支給)	議員이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하는 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	第4條(旅費支給)	議員이 會期中 議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第5條(旅費의 種類)	①國內旅行을 할 경우에 支給하는 國內旅費는 運賃(鐵道運賃, 船船運賃, 航空運賃, 自動車運賃), 現地交通費, 宿泊費, 食費, 食卓料로 구분한다. ②(생략)	第5條(旅費의 種類)	①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 때와 國內旅行을 할 경우에 支給하는..... ②(現行과 같음)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改正理由

1991.12.31.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82條 및 第84條에 依據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를 改正하고자 함.

○主要骨子

- 事務機構를 事務局으로 한다.
- 幹事를 事務局長으로 한다.

○根據法令

地方自治法 第82條 및 第84條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機構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재명중 “事務機構”를 “事務局”으로 한다.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事務局) ①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이하